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0. 7. 16.)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의안번호 제2010 - 32호>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6.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7. 8.

II 제안이유 : 별첨과 같음

III 취득 · 처분재산의 표시 : 별첨과 같음

IV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및 제4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V 검토의견

- 가.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교환안은 2008년 10월 22일자로  
진주측후소 거창분실에서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거창기상대에서 우리군에 건물 신축부지 확보를 요청하였  
으며, 이에 군에서 부지매입(3필지 10,394㎡)을 완료하고

향후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5필지 15,581m<sup>2</sup>)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면 거창군유지는 3필지 10,394m<sup>2</sup>로서 공시지가기준 가액이 1억 82만 2천원이며 기상청 소관 국유지는 5필지 15,581m<sup>2</sup>로서 공시지가 기준 가액이 1억 8천 457만 1천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공시지가 기준 8천 374만 9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추가 예산을 투자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의 (상호 정산 후 초과분 토지)활용계획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교환방법 :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조치

#### 나.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2008. 12. 2 협약체결 2009. 4.16 제158회 임시회 승인) 당초 대상지로 선정 되었던 가조면 도리 산43번지의외 6필지 446천m<sup>2</sup>에 대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 등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골프장 조성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본 사업내에 편입되는 군유지(11필지, 112,093m<sup>2</sup>)

→ 축협이 축사 및 목초지로서 당초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조성 예정지임)에 대하여는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이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거창실버 레포트타운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인조잔디구장 조성 등)과 스포츠파크 주변의 악취제거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돈사)부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양 사업간 사이에 있는 잔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 총39필지, 45,370㎡의 「거창 실버레포츠 타운」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거창 실버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0 - 32
----------	-----------

제출연월일 : 2010. 6. 30
제 안 자 : 거창군수

## □□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교환

### 1. 제안이유

○ '08. 10월 거창기상대 승격(1인→10인 기관)에 따른 청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거창기상대에서 우리군에 신축부지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군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함

★ 교환방법 :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 < 거창기상대 신청사 신축(예정) 현황 >

- 예 정 지 : 거창읍 정장리 967-8번지의 2필지, 10,394㎡
- 규 모 : 청사 759.33㎡(지하 1층/ 지상 2층)
- 준 공 : '10. 12월

### 2. 교환 재산의 표시

#### □ 처분재산[거창군→국(기상청)]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b>3필지</b>	<b>10,394</b>	<b>100,822</b>			
1	과수원	거창읍 정장리 967-8	10,000	97,000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	거창군
2	"	거창읍 정장리 978-37	144	1,397			"
3	"	거창읍 정장리 978-38	250	2,425			"

#### □ 취득재산[국(기상청)→거창군]

##### ○ 토 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b>5필지</b>	<b>15,581</b>	<b>184,571</b>			
1	대	거창읍 김천리 169-9	861	43,825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	국(기상청)
2	구거	거창읍 송정리 1061-22	1,990	26,865			국(기획재정부)
3	답	거창읍 동변리 952-1	4,516	28,451			
4	답	거창읍 동변리 952-3	3,600	22,680			
5	답	남상면 대산리 1034	4,614	62,750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용 도	소 재 지	면 적				
계			272.12	108,842			
1	1종근린 생활시설	거창읍 김천리 169-9	272.12	108,842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	국(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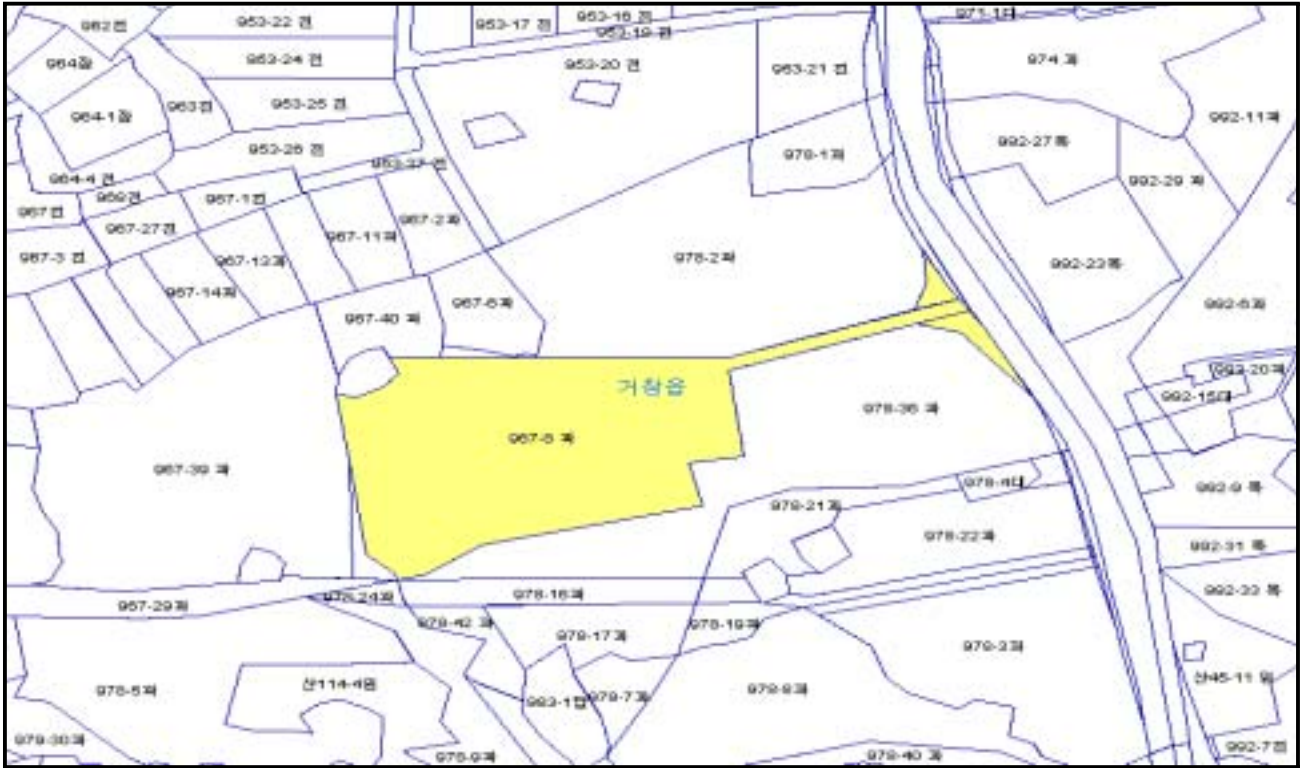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및 제4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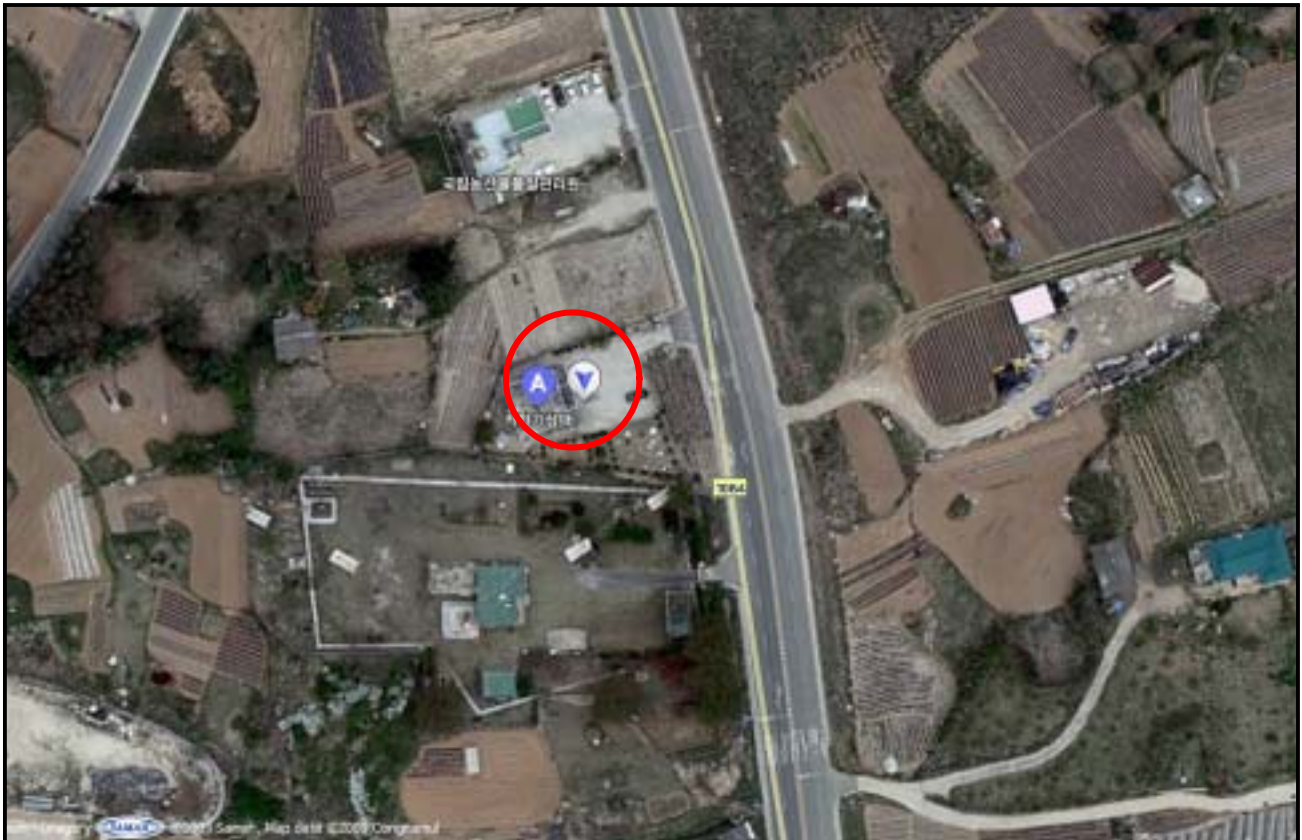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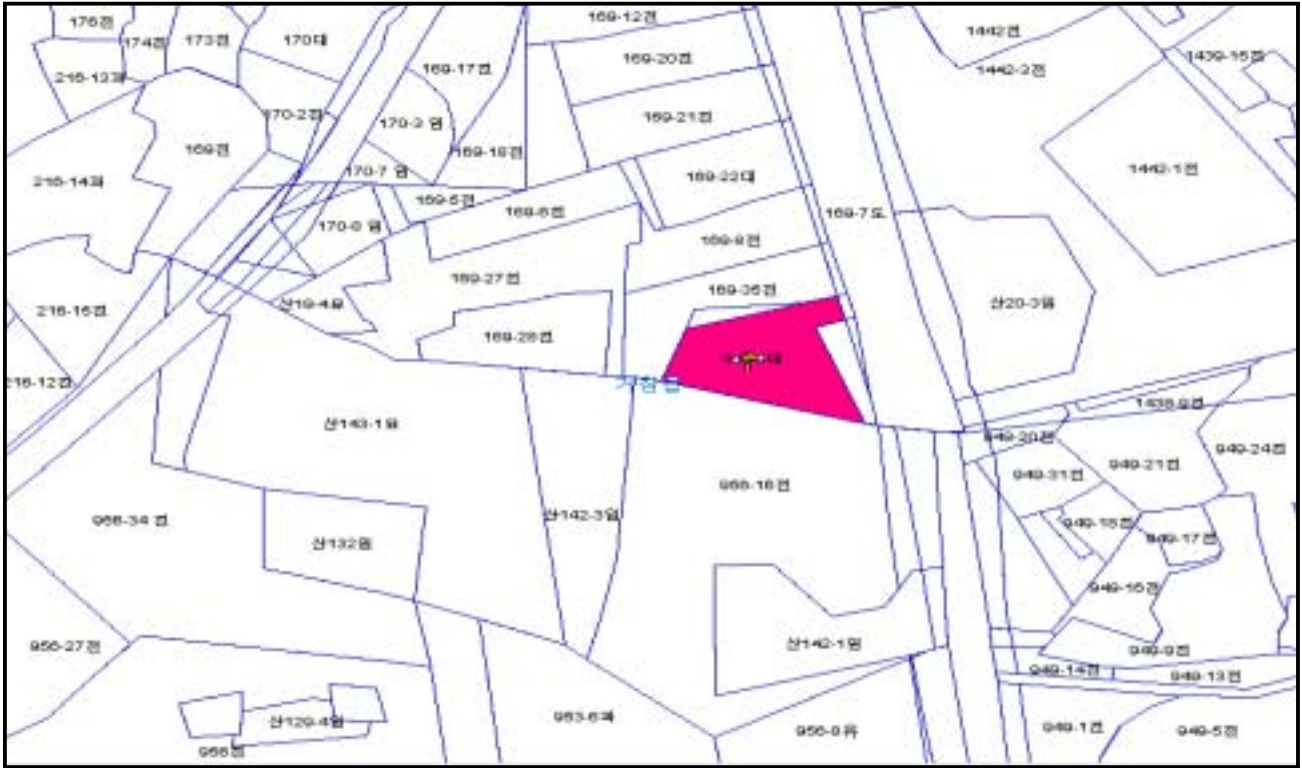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정장리 967-8번지의외 2필지, 과수원, 10,394㎡





# 지적도 및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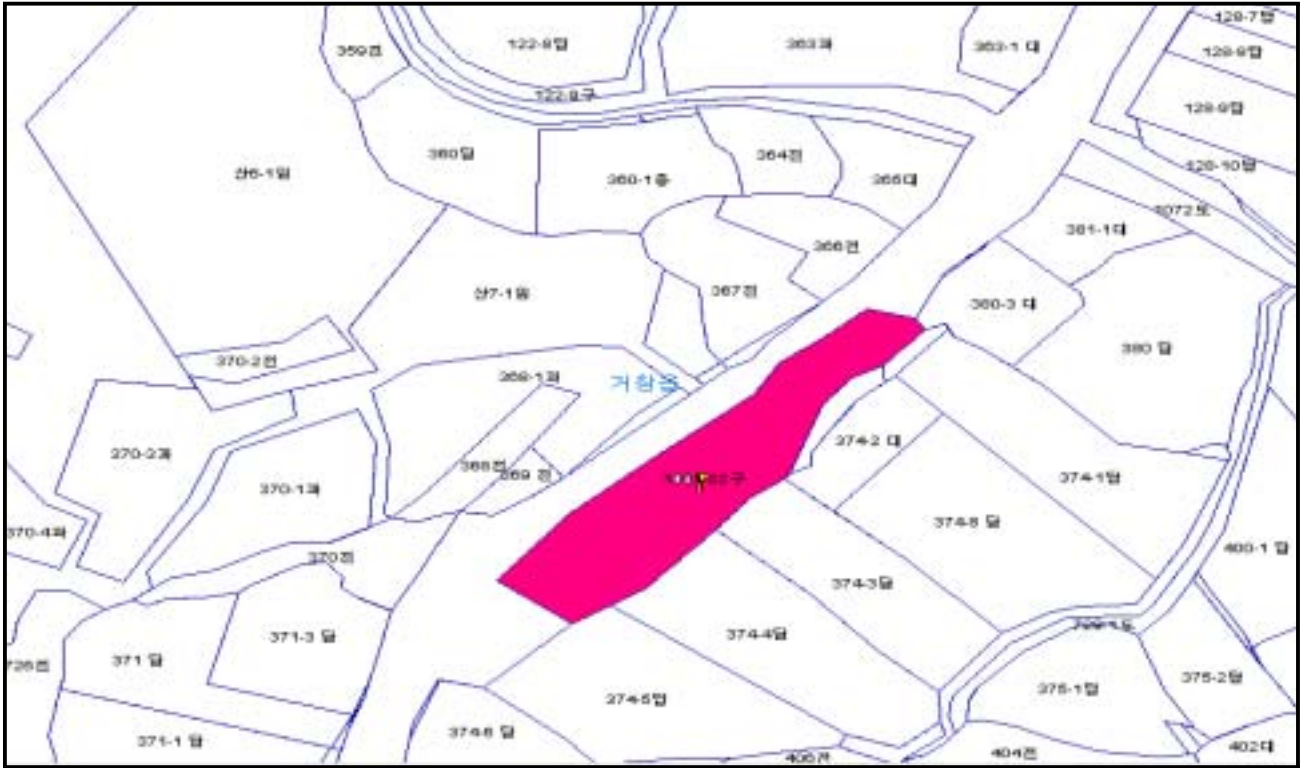
□ 토지소재지 : 거창읍 김천리 169-9번지, 대, 861㎡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송정리 1061-22번지, 구거,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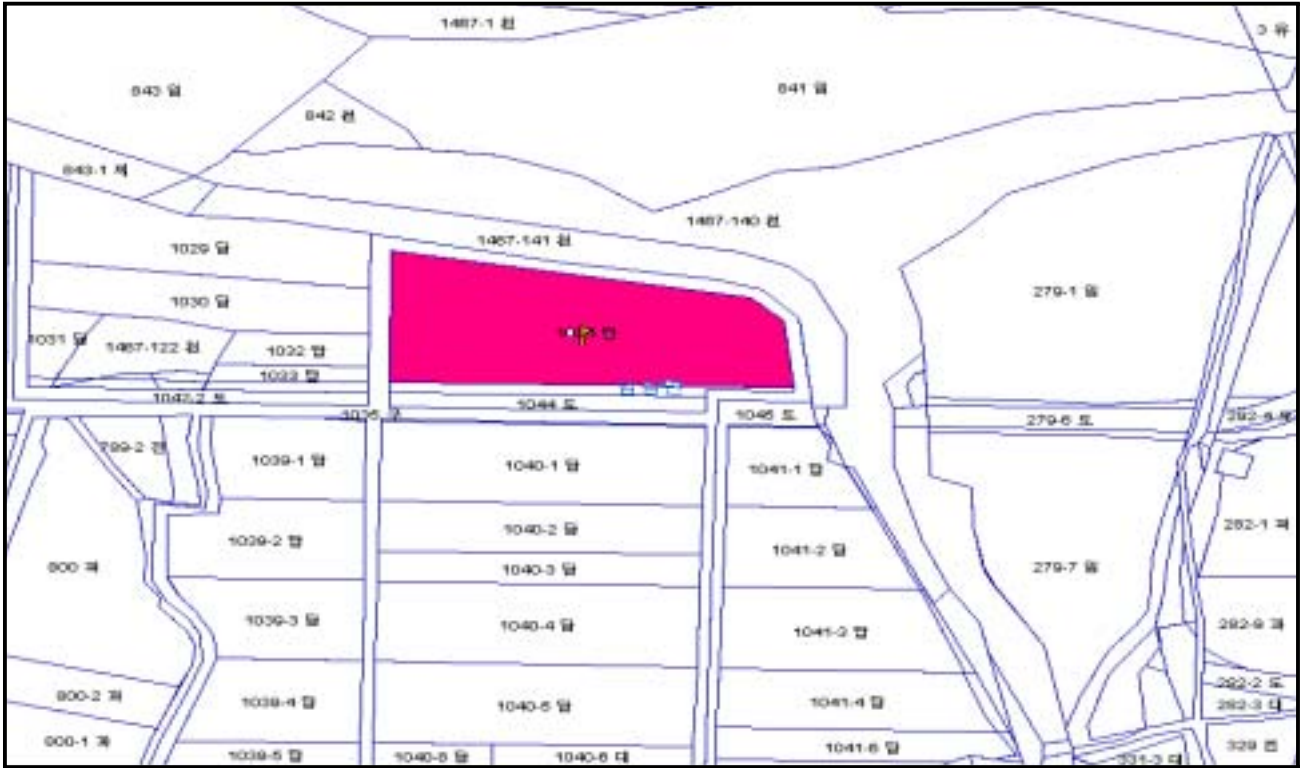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남상면 대신리 1034번지, 답, 4,614㎡



## □□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

###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2009.4.16)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 사업 개요 >

- 예 정 지 : 가조면 도리·석강리 일원, 443,083㎡
- 규 모 : 9홀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년간)
- 사 업 비 : 220억원 정도(체육진흥공단 150억원, 군비 70억원)

### 2. 당초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7필지	446,000	143,412			
1	임야	가조면 도리 산43	46,347	11,355	2009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최경자
2	임야	가조면 도리 산44	89,058	21,819			이원진
3	임야	가조면 도리 산45	158,579	79,765			이상우
4	임야	가조면 도리 산47	298	79			이동주
5	임야	가조면 도리 산57	27,273	6,682			거창군산림조합
6	임야	가조면 도리 산59	1,091	398			김두성
7	임야	가조면 도리 산60	123,354	23,314			홍해최씨평 촌공파종중

### 3. 변경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적				
계		65필지	443,083	294,927			
1	답	가조면 석강리 1	803	1,999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박종호
2	답	가조면 석강리 2	198	493			박종호
3	답	가조면 석강리 6	641	1,135			박내형외2
4	답	가조면 석강리 8	2,641	6,576			오명환외2
5	답	가조면 석강리 9	1,402	3,491			박광술
6	답	가조면 석강리 10	1,068	2,659			김순옥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적				
7	답	가조면 석강리 11	545	1,357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박광술
8	답	가조면 석강리 12	268	667			박광술
9	답	가조면 석강리 13	291	725			신정춘
10	답	가조면 석강리 14	228	568			신정춘
11	답	가조면 석강리 15-1	2,357	5,869			노영호
12	임야	가조면 석강리 15-2	162	403			변희석
13	답	가조면 석강리 16	2,007	4,997			한유문
14	답	가조면 석강리 17	2,298	5,722			박광술
15	답	가조면 석강리 40	1,907	7,685			박윤제
16	답	가조면 석강리 41	248	618			박희성
17	답	가조면 석강리 42	1,055	4,252			김수길
18	임야	가조면 석강리 43	1,974	1,856			강호양외2
19	전	가조면 석강리 44	850	2,117			김수길
20	전	가조면 석강리 45	1,498	6,202			김수길
21	답	가조면 석강리 15-1	9,742	24,258			이유진
22	구거	가조면 석강리 1377-2	2,781	2,920			국(농림부)
2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1	7,962	7,182			이유진
2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3	5,914	5,334			이종환외1
2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4	7,736	6,978			강호양
2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5	40,959	36,167			이익순외2
27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4	397	365			박부돌
28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5	397	365			한갑수
29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6	397	365			한갑수
30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7	13,488	7,715			이병춘
31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	21,810	5,234			박종호
32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1	13,135	3,087			이익순외2
3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2	19,674	4,722			이희경외1
3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9	18,031	4,201			이익순외2
3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10	4,565	1,073			신두성
3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2-1	8,821	1,870			박제현
37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2-2	992	366			오정순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38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3	1,983	1,192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박영도
39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	3,183	1,318			신동용
40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3	993	402			이정학
41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9	5,992	3,427			최정근
42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0	6,644	3,800			김남출
4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1	5,467	2,214			박연희외1
4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2	2,052	831			이영근
4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3	1,966	812			박연희외1
4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4	3,455	1,399			윤영효
47	전	가조면 도리 689	754	3,778			오택근
48	답	가조면 도리 695	843	4,215			오택근
49	답	가조면 도리 696	2,780	12,399			전영범
50	답	가조면 도리 697	2,370	10,570			최병기외1
51	임야	가조면 도리 698	1,025	528			박장근
52	답	가조면 도리 820	1,117	5,094			신원범
53	임야	가조면 도리 산9	66,871	32,901			신원범
54	임야	가조면 도리 산10	198	101			조점출
55	임야	가조면 도리 산11	99	51			조일록
56	임야	가조면 도리 산12	4,364	1,523			상산김씨종중
57	임야	가조면 도리 산13	28,920	7,722			한갑수
58	임야	가조면 도리 산22	23,475	7,794			노철호외1
59	임야	가조면 도리 산23	16,075	5,385			김인용
60	임야	가조면 도리 산24	52,011	11,702			신원범
61	임야	가조면 도리 산24-1	9,905	3,318			박창하
62	임야	가조면 도리 산38	496	356			이현기
63	임야	가조면 도리 산40	298	268	이현기		
64	임야	가조면 도리 산42	198	182	이현기		
65	구거	가조면 도리 산231	307	52	국		

#### 4.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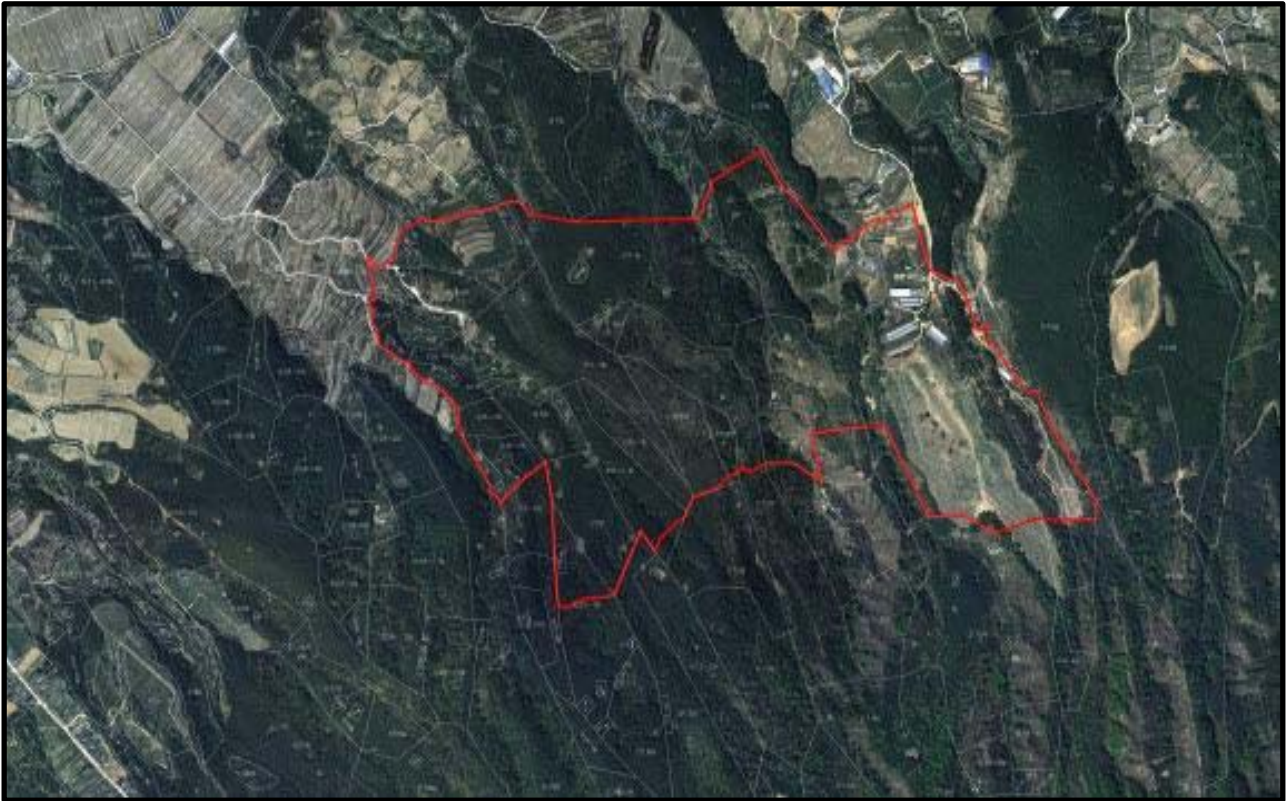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5.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가조면 석강리 1번지외 64필지, 443,083 m<sup>2</sup>



# □□ 거창 실버 레포트타운 조성부지 변경 취득

## 1. 제안이유

○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문화관광과)과 스포츠파크 주변(돈사) 부지매입(재무과)이 다원화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거창 실버 레포트타운 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양 사업간 사이에 있는 잔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실버 레포트타운을 조성하고자 함

★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2009.11.26)시 의결을 받은 안건임

### < 사업 개요 >

- 예 정 지 :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의 38필지, 45,370㎡
- 사업내용
  - 다목적 운동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파크골프장 1면, 씨름장 1면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4년간)
- 사 업 비 : 80억원 정도
- 부서조정 : 재무과,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 2. 당초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b>계</b>		<b>18필지</b>	<b>25,494</b>	<b>361,493</b>				
1	답	거창읍 양평리 1125	1,693	29,966	2010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문화 관광과)	김진원	사업비 : 1,300백만원
2	답	거창읍 양평리 1125-1	484	8,567			김진원	
3	답	거창읍 양평리 1125-2	1,807	31,984			양기환	
4	답	거창읍 양평리 1125-3	2,377	42,073			정숙자	
5	답	거창읍 양평리 1126	2,397	29,963			양봉준	
6	답	거창읍 양평리 1126-1	2,445	30,563			신영균	
7	답	거창읍 양평리 1126-2	2,802	39,228			이규식	
8	구거	거창읍 양평리 1086	1,000	14,000			국(농수산부)	
9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31-3	2,047	25,588	2010	쾌적한 레포트 환경개선 (재무과)	김병수	사업비 : 2,500백만원
10	잡종지	거창읍 양평리 1161	659	10,742			"	
11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1-1	534	4,224			"	
12	대	거창읍 양평리 1162-1	1,491	24,303			"	
13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2-2	2,347	28,164			"	
14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465	6,789			"	
15	대지	거창읍 양평리 1163-4	240	3,720			"	
16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63-5	29	30			"	
17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4	1,270	14,986			"	
1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5	1,407	16,603			"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용도	소 재 지	면 적					
계		3동	1,011.41	12,033				
1	측사	거창읍 양평리 1161외 1필지	838.16	4,808	2010	쾌적한 레포츠 환경개선 (재무과)	김병수	
2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77.76	1,400				
3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4	95.49	5,825				

3. 변경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9필지	45,370	624,184	2010			
1	답	거창읍 양평리 1125	1,693	29,966	2010	레포츠 운성 타조	김진원	운동장 장성 운조 (문화 관광과)
2	답	거창읍 양평리 1125-1	484	8,567			김진원	
3	답	거창읍 양평리 1125-2	1,807	31,984			양기판	
4	답	거창읍 양평리 1125-3	2,377	42,073			정숙자	
5	답	거창읍 양평리 1126	2,397	29,963			양봉준	
6	답	거창읍 양평리 1126-1	2,445	30,563			신영균	
7	답	거창읍 양평리 1126-2	2,802	39,228			이규식	
8	구거	거창읍 양평리 1086	1,000	14,000			국(농)	
9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31-3	2,047	25,588			김병수	
10	잡종지	거창읍 양평리 1161	659	10,742			김병수	
11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1-1	534	4,224			김병수	
12	대	거창읍 양평리 1162-1	1,491	24,303			김병수	
13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2-2	2,347	28,164			김병수	
14	창고 용지	거창읍 양평리 1163-1	465	6,789			김병수	
15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63-5	29	30			김병수	
16	대	거창읍 양평리 1163-4	240	3,720			김병수	
17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4	1,270	14,986			김병수	
1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5	1,407	16,603			김병수	
19	대	거창읍 양평리 1125-5	3,793	65,998			장운호	
20	답	거창읍 양평리 1125-4	2,934	51,052			신영자	
21	답	거창읍 양평리 1126-3	795	9,938			김진윤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22	답	거창읍 양평리 1126-4	1,708	21,350	2010	레포츠 운성 레타 조	김진정	추가토지 매입 (문화 관광과)
23	답	거창읍 양평리 1131	1,313	16,413			김현락	
24	답	거창읍 양평리 1131-1	1,506	18,825			김현락	
25	답	거창읍 양평리 1131-2	941	11,763			김현락	
26	답	거창읍 양평리 1131-4	2,599	34,567			여상술	
27	대	거창읍 양평리 1163-2	345	5,348			변환길	
2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3-3	967	14,989			변환길	
29	구거	거창읍 양평리 1227-9	349	3,340			건설부	
30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32	843	1,779			농수산부	
31	도로	거창읍 양평리 1254-2	55	116			건설부	
32	구거	거창읍 양평리 1227-10	26	94			농수산부	
33	도로	거창읍 양평리 1254	277	1,006			건설부	
34	구거	거창읍 양평리 518	746	3,200			농수산부	
35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2	308	1,321			농수산부	
36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8	219	940			경상남도	
37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1	109	468			경상남도	
38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2	32	137			경상남도	
39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3	11	47			경상남도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용도	소 재 지	수 량					
계		4동	1,061.00	14,396			2명	
1	축사	거창읍 양평리 1161외 1	838.16	4,808	2010	레포츠 운성 레타 조	김병수	주변건물 매입 (재무과)
2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77.76	1,400			김병수	
3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4	95.49	5,825			김병수	
4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2	49.59	2,363			변환길	추가매입

4.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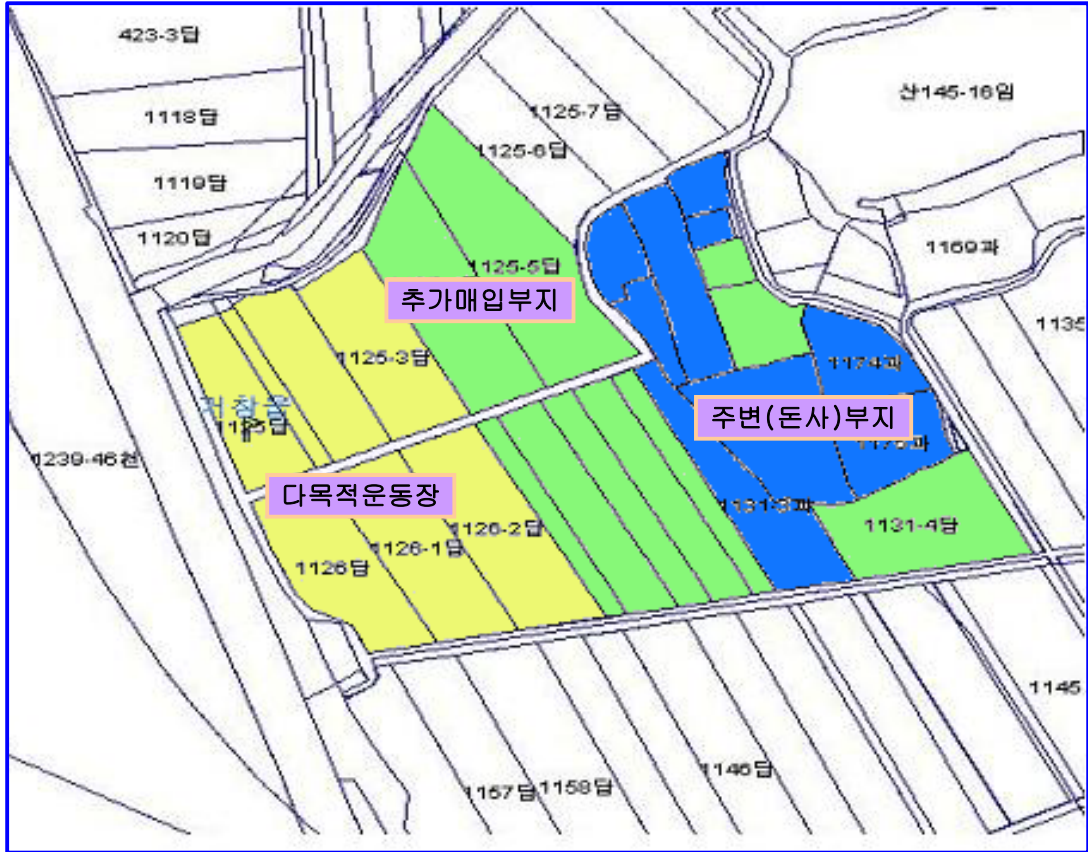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외 38필지



□ 시설배치(안) - 변경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몰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증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